

경기 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목 차

제1조. 경기장의 유지	4
제2조. 경기장	4
제3조. 경기장 부대시설	5
제4조. 조명장치	6
제5조. 벤치	6
제6조. 의료시설	7
제7조. 원정응원석	7
제7조의1. 중립응원석	7
제8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등	8
제9조.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승인	8
제10조. 경기장 점검	8
제11조. 악천후 또는 경기장 시설 문제 발생시 조치	9
제12조. 공식경기	9
제13조. 참가 의무 등	9
제14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9
제15조. 경기규칙	10
제16조. 출전 자격	10
제17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10
제18조. 유니폼	11
제19조. 사용구	11
제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11
제21조. 공식경기 개최기간	12
제22조. 경기일정	12
제23조. 경기일정 준수	12
제24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12
제25조. 경기시간 준수	13
제26조. 동일개최 제한	14
제27조. 혼합개최 금지	14
제28조. 기술위원회	14
제29조. 워밍업 및 쿨다운	15
제30조. 경기중지 결정	15
제3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16
제32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의 보상	16

제33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16
제34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17
제35조. 경기결과 보고	17
제36조. 대회요강	17
제37조. 인터뷰 실시	17
제38조. 통산기록	18
제39조. 친선경기 등	18

경기 규정

제1조 경기장의 유지

K리그 클럽(이하 클럽)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2조 경기장

- ① K리그 공식경기(이하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 ②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홈 클럽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시즌 개막 7일 전까지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고지역 외,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에 경기개최 승인 요청 시,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경기장은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그라운드는 길이 105m, 너비 68m를 권고하며, 천연잔디 또는 하이브리드 잔디이어야 한다. 단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기준

- 인조잔디 내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전체 그라운드 면적 대비 인조잔디 함유 비율 5% 미만
- 최초 설치 시 아래 기준치를 상회하는 성능일 것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51~68%)	(4~10)mm	(21~25)mm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25~50)N/m	(0.6~1.0)m	(4~8)m

나. 제출서류

- 샘플(1m²), 제품규격서, 유해성 검출 시험 결과표, 설치/유지 관리 계획서

다. 승인절차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 필요 시, 현장테스트 진행(최소 10m²이상의 예비 포지 사전 마련)

라. 그라운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2) 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1.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 3) 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검용경기장의 경우 1.5m 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 5)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폴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6) 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으로 한다)
- ⑤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⑥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살수(撒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살수는 경기 킥오프 전 및 하프타임에 실시하며, 경기장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 2) 경기감독관은 경기 시간 및 날씨, 그라운드 상태, 당일 경기장 행사 등을 고려하여 그라운드 관리자와 협의 후, 살수 횟수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 3) 홈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정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사.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⑦ 경기장 관중석은 아래와 같다.
 - 1) K리그1 공식경기 : 좌석 수 10,000석 이상
 - 2) K리그2 공식경기 : 좌석 수 5,000석 이상
- ⑧ 모든 관객석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권고한다.

제3조 경기장 부대시설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을 따른다.

- ① 운영 본부실
- ② 양 팀 선수대기실
- ③ 심판대기실
- ④ 실내 워밍업 지역
- ⑤ 경기감독관석 및 심판평가관석, TSG기술위원 좌석
- ⑥ 기록석
- ⑦ 의무실
- ⑧ 도핑검사실
- ⑨ 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 ⑩ 실내 기자회견장
- ⑪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⑫ 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 ⑬ VIP룸
- ⑭ 기자석(메인스탠드 중앙부로 경기장 전체가 관람 가능하고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전원 및 노트북 등이 설치 가능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을 것)
- ⑮ 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 ⑯ TV중계 방송 부스
- ⑰ 전광판
- ⑱ 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 ⑲ 입장권 판매소
- ⑳ 종합 안내소
- ㉑ 관중을 위한 응급실
- ㉒ 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 ㉓ TV카메라 설치 공간
- ㉔ TV중계차 주차장 공간
- ㉕ 케이블 시설 공간
- ㉖ 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 ㉗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TSG기술위원 대기실
- ㉘ 믹스트 존(Mixed Zone)

제4조 조명장치

- ①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평균 1,2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벤치

- ①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K리그1은 22인 이상, K리그2는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구비되어야 하며, 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재질로 해야 한다.
- ② 홈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원칙적으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전 승인 시, 우측에 홈팀 벤치의 설치가 가능하다.
- ③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3) 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6조 의료시설

홈경기를 실시하는 클럽(이하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과 1대의 특수구급차를 포함하여 최소 2대 이상의 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7조 원정응원석

- ① 홈 클럽은 한 쪽 골대 뒤 관중석 구역의 전체 좌석을 개방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한 전용 좌석(이하 '원정응원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구역이 복층인 경우 1층 전체를 먼저 개방하고 원정응원석이 매진되면 2층 이상의 구역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
- ② 원정응원석의 수량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의 5% 이상으로 하되, 전 좌석 매진 등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 클럽을 응원하고자 하는 관중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원정 클럽은 경기 개최 일주일 전까지 홈 클럽에 원정응원석의 수량, 위치 정보의 제공 및 추가 좌석 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홈 클럽은 원정 클럽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원정응원석은 그라운드와 가까운 좌석부터 배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전 시야, 밀집도, 기타 관람 편의를 다른 좌석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 ⑤ 원정응원석의 가격은 같은 조건의 다른 좌석보다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된다.
- ⑥ 원정응원석에는 독립된 출입문,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의1 중립응원석

- ① 한 쪽 골대 뒤 관중석 구역의 일부만 원정응원석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나머지 좌석은 홈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과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이하 '중립응원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홈 클럽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정응원석, 중립응원석, 일반 관중석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일부 좌석을 완충 구역으로 설정하여 비워놓을 수 있다. 단, 완충 구역의 폭은 좌석 블록 1개를 넘을 수 없다.
- ③ 홈 클럽은 중립응원석에 입장한 관중이 원정 클럽을 응원하거나 원정 클럽의 의류 · 머플러 · 기타 장신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장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안전관리 및 경기장 질서 유지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중립응원석의 가격은 같은 조건의 다른 좌석보다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된다.

제8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등

- ①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 항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TSG기술위원 소개
 - 2) K리그 선수 입장곡
 - 3) 선수 및 심판 교체
 - 4)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 5) 추가시간
 - 6) 공식 관중 수(유료 관중 합계, 후반전 15~30분,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 7) 경기 중, 경기정보 전광판 표출(양팀 출전선수명단, 경고, 퇴장, 득점)
 - 8)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안
 - 9) 경기 중, VAR상황 시, VAR 영상판독 문구 전광판 표출
 - 10) 상기 1~9호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② 홈 클럽은 시합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 2)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 3) 음악방송
 -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 5) 상기 항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9조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승인

- ① 홈 클럽은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 경기개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경기장 시설 현황
 - 2) 홈경기 안전계획서
- ② 연맹은 법령 및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의해 시즌 개막 15일 전까지 각 클럽의 홈 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을 점검하여, 공식 경기 개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장에서는 공식경기 개최를 불허하며, 제10조에 의한다.

제10조 경기장 점검

- ①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한다.
- ② 연맹은 서면보고 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앞 1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1조 2항에 따른다.
- ④ 앞 3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제33조 1항에 따른다.

제11조 악천후 또는 경기장 시설 문제 발생시 조치

- ① 홈 클럽은 강설, 강우, 폭염 등 악천후의 경우 또는 경기장에 시설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 개최 시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장 상황과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개최 시간을 각 30분씩 최대 2회 연기할 수 있다.
- ④ 경기 개최 시간을 2회 연기하였음에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본 조에 따라 경기 개최가 취소된 경우 재경기 개최 절차는 제31조를 따른다.

제12조 공식경기

- ① K리그에서 공식경기란 다음의 경기를 말한다.
 - 1) K리그1
 - 2) K리그2
 - 3) 리그컵
 - 4) 플레이오프(K리그2 PO, 승강PO)
 - 5) 상기 항 이외 이사회가 지정한 경기
- ② 클럽은 상기 ①항 홈경기의 과반 이상을 홈 경기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된다.

제13조 참가 의무 등

- ① 클럽은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공식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소속 선수가 대표팀 또는 선발팀 등의 일원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참가시킬 의무가 있다.

제14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 ① 공식경기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클럽의 주관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클럽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단, 연고지역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경기 개최가 복수 횟수에 이르는 경우에도 그 경우 마다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4~6호에 해당하는 경기는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16조 출전 자격

- ①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맹 선수규정에 따라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
 - 2)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의 프로경기 출전을 위한 계약 세칙에 의거하여 경기일 전날까지 준프로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된 선수
- ② 선수규정 제6조에 의거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 및 팀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③ 제재 중인 지도자(이하 코칭스태프)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경기 전 훈련 지도 및 경기 중 전자 장비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2)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하며,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본 항 1호를 위반한 코칭스태프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④ 선수이면서 코칭스태프로 등록된 자가 선수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제3항을 적용한다. 코칭스태프로서 출장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재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 ⑤ 경고, 퇴장, 상벌위원회 징계 등에 따라 출전이 정지된 선수,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출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제17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클럽과 원정 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의 수는 최대13명까지로 하며, 스카우트,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는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 선수 교체는 대회 요강에 따른다.
- ④ 출전선수명단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유니폼

- ① 모든 공식경기에서는 마케팅 규정상의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상기 1항의 유니폼에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번호 (1~99번에 한함)와 일치한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③ 팀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암 밴드)를 착용 하여야 한다.
- ④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 전 연맹(경기감독관) 및 상대 클럽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하며,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클럽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유니폼 안에 착용하는 이너웨어의 색상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가. 상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유니폼 상의 소매의 주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단, 유니폼 상의 소매 부분의 주색상이 상대팀 유니폼의 주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유니폼 상의의 주색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나. 하의 이너웨어의 색상은 반드시 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색상과 동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⑥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계열)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기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9조 사용구

공식경기 사용구는 연맹에서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 ① 홈 클럽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② 홈 클럽은 상기 1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안전 가이드라인, 가변석 관련 가이드라인, 기타 연맹의 지시 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경기감독관은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클럽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클럽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상기 3, 4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 마. 항 및 바.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⑦ VAR 운영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회요강에 따른다.
- ⑧ 홈 클럽은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경기장에서 소요사태를 유발하거나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친 개인 혹은 단체의 신원을 파악하여 수사 의뢰, 경기장 출입금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⑨ 홈 클럽은 선수단 구역과 양팀 선수대기실 출입구에 경호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 영상을 15일간 보관해야 한다.
- ⑩ 연맹에서 제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5조 마. 항 및 바. 항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공식경기 개최기간

제12조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실시한다. 단, 해당 일정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제22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각 클럽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제23조 경기일정 준수

클럽은 제22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공식경기 개최일, 킥오프 시간 및 개최지 등의 경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 ① 클럽은 공식경기 개최일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해당 경기의 일시 또는 경기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연맹은 이를 심의하여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클럽 및 상대 클럽에 통지한다.
- ③ 연맹은 공식경기가 예정된 경기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워정 클럽의 홈 또는 제3의 경기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장 변경에 대한 귀책사유는 홈 클럽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공식경기의 일시 또는 경기장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된 비용이나 손해는 변경을 신청한 클럽이 이를 부담한다. 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의 일시 또는 경기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다.
- ⑤ 연맹은 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구단의 지원, 중계방송상의 중대한 사유, 경기장의 대규모 개·보수 등을 위해 경기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경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경기시간 준수

- ①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이 경기 시작 시간 또는 하프타임 종료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경기 시작 또는 재개 시간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1회 미준수 시 : 100만원의 제재금
 - 2) 2회 미준수 시 : 200만원의 제재금
 - 3) 3회 이상 미준수 시 : 400만원의 제재금 및 상벌위원회 제소
- ③ 경기에 참가하는 팀(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은 경기시작 10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1)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4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경기감독관에게 그 사유와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시간 변경 유무를 심판 및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연맹으로 통보한다.
 - 2) 경기시간이 변경될 경우, 홈 클럽은 전광판 및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 변경된 경기시간과 변경사유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3) 어느 한 팀이 경기시작 시각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은 45분간 대기할 의무가 있다. 45분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은 30조 1항에 의한다.
 - 4) 경기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있으며 32조에 따른다.
 - 5) 홈/원정팀은 경기개최지로의 이동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이동시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팀의 도착 지연으로 킥오프가 지연될 경우, 연맹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 재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동일개최 제한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2경기 이상 개최할 수 없다.

제27조 혼합개최 금지

공식경기는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및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 할 수 없다.

제28조 기술위원회

- ① 연맹은 공식경기 및 대회의 운영과 리그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2) 위원장은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기술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기술위원회는 동조 ①항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기술위원의 자격은 정관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프로경기 100경기 이상 출전한 자
 - 2) 프로감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었던 자
 - 3) 리그 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식경기 및 대회의 경기감독 및 경기감독관 운용
 - 2) 리그발전을 위한 규정, 제도개선
 - 3) 리그발전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기술 연구
 - 4) 기타 연맹에서 부여하는 업무
- ⑤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⑥ 경기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고 없이 4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경기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악천후나 경기개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 하여야 한다.
 -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포함)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경기개시 90분전, 홈 클럽 및 원정 클럽의 출전선수명단을 확인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5) 사전에 결정된 양 클럽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클럽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 클럽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하되, 그래도 색상 식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홈 클럽도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클럽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클럽 선수대기실과 심판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8)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K리그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9) 상별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0) 상기 1~9호 이외에 총재가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⑧ 경기감독관은 하절기(6월~8월) 기간 중, 대회 대회요강에 따라 쿨링 브레이크 제도(워터 타임)의 실시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29조 워밍업 및 쿨다운

- ① 출전선수명단에 포함된 선수 및 스태프는 그라운드에서 경기 시작 전 또는 하프타임 중 몸풀기 운동(이하 '워밍업') 및 경기 종료 후 몸풀기 운동(이하 '쿨다운')을 할 수 있다.
- ② 경기 시작 전 워밍업은 킥오프 50분 전에 시작하여 20분 전에 종료한다.
- ③ 홈 클럽은 워밍업으로 인한 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감독관에게 이동식 골대 사용, 스프린트 연습 구역 지정, 워밍업 제한 구역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경기감독관은 제3항이 요청이 있을 경우, 잔디 상태, 양 클럽 간 형평,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고, 양 클럽은 경기감독관이 승인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홈 클럽 및 그라운드 관리자는 양 클럽의 선수단에 하프타임 이벤트의 내용, 위치, 시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하프타임 중 워밍업을 하는 선수 및 스태프는 고지된 이벤트와 관련된 기물 또는 사람과 충돌하거나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⑥ 경기 종료 후 쿨다운은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⑦ 쿨 다운을 할 때에는 볼을 사용할 수 없고, 경기감독관이 워밍업 제한 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제30조 경기중지 결정

-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기 취소·중지 및 재경기

-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경기장 조건,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중지된 경우,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그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경기장을 정한다.
- ③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관중의 소요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취소·중지된 경우 원정 클럽은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홈 경기로 재경기를 개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원정의 변경 여부는 연맹이 결정한다.
- ③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 2)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제32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의 보상

- ①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앞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①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③ 앞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④ 앞 2항의 무자격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34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①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클럽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제35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 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36조 대회요강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맹이 정한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37조 인터뷰 실시

- ① 홈 클럽은 경기종료 후 15분 이내에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식기자회견 이전에 그라운드에서도 플래시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 당일 위 제1항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인터뷰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업무대행자가 각 활동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 ③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한 인터뷰 배경막(백드롭)을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가 요청하는 선수와 양 클럽 감독으로 한다.
- ⑤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 2)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 ⑦ 경기 후 미디어 부재로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홈팀 홍보담당자는 양 클럽 감독의 코멘트를 경기 종료 1시간 이내에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

제38조 통산기록

- ① 승부차기 승
 -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리 클럽의 승점은 해당 연도 대회요강에 따르며, 시즌종료 후 통산 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클럽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 ② 기권승, 몰수승, 순연경기 승리는 기록에 포함시킨다.
- ③ 추첨 승
 - 추첨 승은 앞 1항의 승부차기 승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개인 기록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개인 연속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대표팀 소집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 2) 통산 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슈퍼컵, 올스타전, K리그 지정 경기의 기록은 배제된다.

제39조 친선경기 등

- ① 클럽이 비공식경기를 흥행성 경기(유료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수입발생)로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30일) 전까지 다음의 각 호에 서류를 제출하여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 1) 승인신청 공문 및 신청서 (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 2) 신청자 이행각서 (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 3) 대회규정 (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 4) 연맹 및 KFA의 기타 요구서류 (시설물 사용동의 공문, 대회 협약서, 참가 클럽 확정 공문 등)
- ② 외국클럽과의 경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클럽이 외국 클럽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장소가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외국 클럽과 흥행성 대회는 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개월(60일) 전까지, 흥행성 경기는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30일) 전까지 제38조 1항에 의거

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의 참가를 위한 승인 신청은 대회 개막 1개월(30일)전까지 연맹 및 협회에 국제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경기의 참가를 위한 승인 신청은 경기일 14일전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외국 클럽과의 비호스팅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도 경기(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항의 경기(대회) 개최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 ③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는 사전에 소속 클럽의 승인 없이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 ④ 은퇴경기는 한국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 (K리그에서 활약하고 K리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선수의 전 소속클럽 또는 현 소속클럽이 신청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개최한다.
- ⑤ 연맹과 클럽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공식경기(연맹이 승인한 경기 포함)의 전에 개최되는 오픈경기나 축구클리닉, 사전 그라운드 내에서의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맹의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개정내역

2019/12/02	개정
2020/01/20	개정
2020/08/20	개정
2020/12/15	개정
2022/01/17	개정
2023/01/16	개정
2023/10/24	개정
2023/12/04	개정
2024/02/23	개정
2024/11/29	개정
2025/02/03	개정
2026/01/16	개정
2026/06/17	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www.kleague.com